

회계처리 문의

Q

당사는 A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하는데 생산 캐파가 부족하여 A가 해야할 조립가공을 당사 외주업체의 지원을 받아 작업을 진행(4월~5월)하였고 대금은 당사가 외주업체에 먼저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에 5월 마감시 A에게 외주업체 지원 인건비를 공제하고자 하는데 질문인 즉,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외주업체 지출되었던 추가 인건비 품의를 증빙으로 A사에 대금 지급시 공제처리만 하면 될런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A사를 매입자로 하여 발행해 처리해야 할런지 여부입니다.

A

외주업체의 조립가공용역에 대한 최종 대금 부담자가 A이므로, A는 조립가공용역을 제공한 외주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고 해당 조립가공용역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귀사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기계장치 수리에 따른 비용에 대한 기본적지출 가능여부

Q

기존에 20년정도 사용한 기계장치에 대해 수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계장치 수리는

- 최초 성능이 100 이었으나 오랜 사용으로 인해 성능이 70으로 떨어져있으며 수리를 통해 100의 성능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작업
- 기계의 오랜 사용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이에 대해 전체적인 수리를 진행해 원활한 사용이 되도록 하는 작업

상기 2가지의 형태가 주를 이룰 예정입니다.

해당 수리를 통해 기계장치의 사용가능기한은 현재의 상태일때보다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럴 경우 해당 수리비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법인세법상 자본적지출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의미하는데, 자산이 원래 성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수선비는 수익 적지출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 ■ ■ 귀사의 경우도 자산의 원래성능회복을 위한 수선비라면 수익적지출로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인 사업소득 신고 문의

Q ■ ■ ■ 국내거주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프리랜서가 있어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외국인 분이 국내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미국에 체류하게 되었을 경우(베트남 국적 미국 신분) 비용 지급시 소득신고 유형과 세금신고 등 방법 문의드립니다.

A ■ ■ ■ 국내세법은 외국인/내국인이라는 국적이 아닌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으로 국내과세 및 원천징수여부가 결정되는데,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해당 외국인의 거주자 여부가 불명확한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가 되므로 국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주류카드

Q ■ ■ ■ 주류회사에서 주류를 구매하고 주류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거래를 한 업체가 소규모 양조장이어서 주류 단말기를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주류카드로 대금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구매금액에 맞추어 발행 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계좌이체로 대금 지급을 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A ■ ■ ■ 주류 구매후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계좌이체로 대금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나, 주류카드 가맹점 등으로 가입하지 않고 주류카드 발행비율이 낮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속 거래할 예정이라면 거래 상대방에게도 주류카드 가맹점에 가입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